

##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

관세법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4. 30.

관 세 청 장

할당관세품목	상세품명 및 규격	세번부호(HSK)	적용기간
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(닭의 것)	절단하지 않은 육(냉동한 것)	0207.12-0000	2023.05.01. ~ 2023.06.30.
	절단육(냉동한 것) 다리	0207.14-1010	
	절단육(냉동한 것) 가슴	0207.14-1020	
	절단육(냉동한 것) 날개	0207.14-1030	
	절단육(냉동한 것) 기타	0207.14-1090	
	설육(냉동한 것) 기타	0207.14-2090	
닭으로 만든 것	삼계탕	1602.32-1010	
	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	1602.32-1090	
	기타	1602.32-9000	
부화용 수정란	기타(오리 부화용 수정란)	0407.19-0000	
리크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냉동채소 (그 밖의 채소)	대파	0703.90-2000	
	기타(대파)	0710.80-9010	
건조한 채소 (그 밖의 채소)	대파	0712.90-2030	
당근~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(신선한 것 이나 냉장한 것)	무	0706.90-1000	
감자(신선한 것 이나 냉장한 것)	기타(감자칩 제조용)	0701.90-0000	2023.05.01. ~ 2023.11.30.

끝.